#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32 발의연월일: 2020. 12. 2.

발 의 자 : 변재일 · 김민철 · 윤영찬

양정숙 · 한준호 · 이용빈

고용진 · 임호선 · 이장섭

민형배 · 김민기 · 임오경

의원(12인)

## 제안이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현행법은 위치정보의 정의가 매우 광범위하여 위치정보 수집 목적 없이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까지 위치정보의 개념에 포함되어 사 업자 등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개인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 규제가 스타트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위치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던 것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법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히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긴급상황 시 긴급구조기관 등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 대상 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청시 위치정보의 범위를 명 확히 하고자 하고, 정기적으로 위치정보사업자의 측위정보 품질에 대한 평가를 하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가. 위치정보 정의 명확화

위치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된 것으로 하여 위치정보 수집목적 없이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를 위치정보에서 제외함(안 제2조제1호).

#### 나.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사업을 허용하던 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물적 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3조).

#### 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

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라.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또는 제공할 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을 동의 받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 마.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은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처리방침을 공개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 바.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개인위치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거나 보유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파기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함(안 제23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 신설).

# 사.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긴급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등이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 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때, 해당 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기지국·Wi-Fi·GPS 등 각 측위 방식 별 위치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29조제5항).

# 아. 긴급구조 측위정보 품질 측정 결과 공개

방송통신위원회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동통신사 등 위 치정보사업자의 측위정보 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 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

## 자. 시정조치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등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받은 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집된"을 "측위된"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을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① 개 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1. 법인일 것
- 2.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출 것
- 3.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가.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 나. 신청한 법인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변경으로인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등록한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공정경쟁또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등록·변경등록·신고의 방법·절차, 등록·변경등록의 심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제5항 중 "허가를"을 "등록을"로 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전단 중 "허가"를 "등록"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허가취소"를 "등록취소"로 한다.

제7조제3항제4호 중 "허가"를 "등록"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허가를"을 "등록을"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정지 등)"을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정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허가"를 각각 "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5조제1항·제7항"을 "제5조제1항·제2항"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등록·변경등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의2.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취소 또는 사업 의 정지를 요청한 때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과징금 부과대상자"라 한다)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 3.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 또는 같은 조 제 2항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존조치 를 취하지 아니한 자
- 4. 제18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자
- 5. 제19조제1항·제2항·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자
- 6. 제21조를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가 개인위치 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 지명령 대신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100 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 부과대상자와 비슷한 규모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⑧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7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 정거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로 본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누출"을 "유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 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을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 자료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이하 "위치정보 수집·이 용·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한다)를"로 한다. 제18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제19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처리방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 1. 개인위치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 2.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 3.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4.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거나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는 때

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위치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5항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을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 요청을 받은 위치정 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각 측위 방식에 의해 수집하게 되는 개인 위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로 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품질측정 및 공개) ① 방송 통신위원회는 제29조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제공되는 개인위치정보의 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 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품질측정 및 결과 공개에 관한 방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①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정보기반서 비스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위치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정부는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협회의 인가 절차,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6조의2(시정조치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등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으며,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기준 및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기 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중 "허가"를 "등록"으로 한다.

제39조제1호 중 "허가를 받지"를 "등록을 하지"로,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한다.

제40조제1호 중 "제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를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변경등록을 한 자"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7호의 2, 제8호의2, 제8호의3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5조제7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

- 1. 제5조제5항에 따른 등록조건을 위반한 자
- 1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 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 3의2.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 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 3의3.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 7의2.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8의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8의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15.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의 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행정처분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위치정보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이 법 시행일 전날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신청된 것으로 본다.
- 제4조(허가 취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1 항에 따른 허가 취소처분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심사에 있어서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 취소처분으로 본다.
- 제5조(과징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환급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 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 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 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 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 ----- <u>측위된</u> -----다. 제2장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제2장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 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 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 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여야 한다.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1. 법인일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2.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 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한 물적 시설을 갖출 것 받아야 한다. 3.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개인 위치정보주체 및 제26조제1항 ② 삭제

-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 사하여야 한다.
- 1. 위치정보사업계획의 타당성
- 2. 개인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 술적·관리적 조치계획
- 3.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 의 적정성
-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5.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위 치정보의 정확성 · 신뢰성 제고, 공정경쟁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에 필 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 자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 요령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⑦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 술적 • 관리적 조치를 할 것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가.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제 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신청한 법인이 제13조제1 항에 따른 등록 취소처분 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위 치정보사업자"라 한다)가 등록 한 사항 중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위 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 준이 등록한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 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상호 또 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 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 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

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개인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가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변경으로 인하여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허가받은 때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⑧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7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여야 한다.
- 1. 제3항에 따른 심사사항에 부

   적합한 경우
- 2. 신청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수
- 3.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 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의 정확성·신뢰성제고, 공정경쟁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등
   록・변경등록・신고의 방법・
   절차, 등록・변경등록의 심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당하는 경우

- 4. 신청한 법인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처분이나사업의 폐지 명령을 받은 후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경우
- 제5조의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 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 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 업의 신고) ① ~ ④ (생 략) 업의 신고) ① ~ ④ (현행과
  - ⑤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제5 조제1항에 따른 <u>허가를</u> 신청한 때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사물위치 정보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 업자"라 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 _ ` ·		, 0	_	,, ,
로	하지	아니	하는	위치기	정보사
업으	1 신3	z) (1)	~	4 (	현행과
같음	+)				
5					
			<u>등</u>	<u> 록을</u> -	
				<b>.</b>	
제6조	(임원	또는	종	업원의	결격
사유	<del>-</del> ) ①				

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16조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 접근권 한자(이하 이 조에서 "접근권 한자"라 한다)로 지정될 수 없 다.

- 1. ~ 5. (생략)
- 6. 제13조제1항에 따른 <u>허가의</u> 취소처분 또는 사업의 폐지명 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법인인 때에는 <u>허가취소</u>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그 대표자를 말한다.

# ②・③ (생략)

- 제7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② (생략)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하여 야 한다.
  - 1. ~ 3. (생략)
  - 4. 신청한 법인이 제13조제1항 에 따른 허가의 취소처분이나

,
1. ~ 5. (현행과 같음)
6 <u>등록의</u>
<u>등록취소</u>
<u>.</u>
②・③ (현행과 같음)
세7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② (현행
과 같음)
3
1. ~ 3. (현행과 같음)
4
<u>등록의</u>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생략)

④ ~ ⑦ (생 략)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 저고) ① ~ ③ (생 략)

④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제5 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때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조의2제1항본문에 따른 소상공인등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소상공인등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생략)

제13조(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저 폐지·정지 등) ① 방송통신위 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 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 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5.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세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
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4
<u>등록을</u>
⑤ (현행과 같음)
세13조(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u>폐지·정지 등)</u>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u>허가</u>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u>허가</u>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제7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변경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제5조의2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때 2. ~ 4. (생략) <신설>
- 5.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따른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

<u>등록</u>
- <u>등록</u>
1
<u>제5조제1항ㆍ제2항</u> -
<u></u> -
<u>록 • 변경등록</u>
2. ~ 4. (현행과 같음)
4의2.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취소 또
는 사업의 정지를 요청한 때
<u>&lt;삭 제&gt;</u>

자료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 사실 확인자료(이하 "위치정 보 수집 • 이용 • 제공사실 확 인자료"라 한다)의 보존조치 를 취하지 아니한 때

- 6.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 관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동 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 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한 때
- 7.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제5 항을 위반하여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 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한 때
- 8.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 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 정 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때

② (생략)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 송통신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가 개인위치 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

<삭 제>

<삭 제>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과징금 부과대상자"라 한다)에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 | 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 업의 정지명령 대신 위치정보 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 정 등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 징금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 음날부터 연 100분의 8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납 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 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 및 제3항에\_따른\_가산금을 납부하 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 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 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 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 3.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 또는 같 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사실 확인자 료의 보존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자
- 4. 제18조제1항·제2항을 위반 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 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자
  - 5. 제19조제1항·제2항·제5항 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 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 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자

6. 제21조를 위반하여 이용약관 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 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3조제 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가 개 인위치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 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위치 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 금 부과대상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 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 부과대상자와 비 슷한 규모의 개인위치정보사업 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 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 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 금을 징수한다.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기간에 과징금과 제6항에 따른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제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u>위치정</u> 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 <u>자료를</u>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 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 여야 한다.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
<u>다.</u>
⑧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흰
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7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로 본다.
]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①
<u>유출</u>
② 위치정
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및 위치
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이하 "위치정보 수집·이용·제
공사실 확인자료"라 한다)를 -

③ ~ ④ (생 략)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①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을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략)

②・③ (생략)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1. ~ 4. (생 략) <신 설>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①
1. ~ 4. (현행과 같음)
4의2.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
는 제공) ①
1. ~ 4. (현행과 같음)
4의2.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5. (생략) ② ~ ⑤ (생 략) <u><신</u> 설>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 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 항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 5.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21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 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사업 자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경 우,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처리방침 을 반영하여야 한다.
  - 1. 개인위치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 2.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 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 거 및 보유기간
  - 3.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4.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처 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한 사항

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 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 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16조제2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16조 제2항에 따라 기록・보존하여 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개인위 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 치정보의 이용) ① ~ ④ (생 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 ⑤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하는 위치정보 수집 • 이용 • 제 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 •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개 치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 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거나 개인위치정 보를 보유해야 하는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위치정 보를 보유할 수 있다.

-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1항 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파기 하는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 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 다.
- ③ 개인위치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 치정보의 이용) ① ~ ④ (현행 과 같음)

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 청을 할 때 요청을 받은 위치 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각 측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의 방식에 의해 수집하게 되는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 개인 위치정보의 전부 또는 일 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 부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요청을 -----

<신 설>

제30조의3(긴급구조를 위한 개인 위치정보 품질측정 및 공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9조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긴 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제 공되는 개인위치정보의 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u>있</u>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의 품질측정 및 결과 공개에 관한 방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①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정보 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사업 을 경영하는 자는 위치정보산 업의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

<신 설>

<신 설>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위 지정보산업협회(이하 이 조에 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 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 ④ 정부는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협회의 인가 절차,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시정조치 등) ① 방송 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등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조 치의 명령을 받은 자에게 시정 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 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 우 공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청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u>허가</u>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처분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 여 <u>허가를 받지</u> 아니하고 위 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u>허가를 받은 자</u>
  - 2. ~ 6. (생략)
-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전
단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 경
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
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
개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37조(청문)
제39조(벌칙)
1
<u>등록을 하지</u>
등록을 한 자
2. ~ 6. (현행과 같음)
제40조(벌칙)

- 1. 제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 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1의2. ~ 5. (생 략)
-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다.
  - 1. 제5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

     을 위반한 자

     <신 설>

2. ~ 3. (생 략) <신 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
<u>등록을 하지</u>	
변경등록을 <del>현</del>	<u> </u>
1의2. ~ 5. (현행과 같음)	
제43조(과태료) ①	

- 제5조제5항에 따른 등록조건
   위반한 자
  - 1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 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 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 2. ~ 3. (현행과 같음)
  - 3의2.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 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 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u>자</u>

## <신 설>

- 4. ~ 5.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7. (생략) <신 설>

8. (생략) <신 설>

<신 설>

9. ~ 14. (생략)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u>3의3.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u> 9	겁
의 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4. ~ 5.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 7의2.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 지 아니한 자
- 8. (현행과 같음)
- 8의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8의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 집 · 이용 · 제공사실 확인자료 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9. ~ 14. (현행과 같음)
- 15.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방 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 정조치의 명령 또는 공표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9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호나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신고를 한 자
- 2. (생략)
- ④ ~ ⑧ (생 략)

,
1. <u>제5조제2항</u>
2.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